붙임 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

평점요소	총 배점	배점기준		비 고 (구비서류)
		기준	점수	
무주택 기간	20	10년 이상	20	*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, 배우자,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* 무주택기간은 제27조제3항,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53조의 규정을 따름 *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무허가 건물 확인서
		9년 이상~10년 미만	18	
		8년 이상~9년 미만	16	
		7년 이상~8년 미만	14	
		6년 이상~7년 미만	12	
		5년 이상~6년 미만	10	
		4년 이상~5년 미만	8	
		3년 이상~4년 미만	6	
		3년 미만	4	
배우자와 혼인기간	20	15년 이상	20	* 혼인기간 :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혼인 지속기간 *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		13년 이상~15년 미만	17	
		11년 이상~13년 미만	14	
		9년 이상~11년 미만	11	
		7년 이상~9년 미만	8	
		5년 이상~7년 미만	6	
		3년 이상~5년 미만	4	
세대원 구성	15	5인 이상	15	* 세대주 포함, 동거인 제외 * 세대원 :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* 주민등록등본
		4인	11	
		3인	7	
		2인 이하	3	
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	15	10년 이상	15	*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으로 특별공급 해당시·도(현재 주민등록 기준)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* 주민등록등본
		8년 이상~10년 미만	13	
		6년 이상~8년 미만	11	
		4년 이상~6년 미만	8	
		2년 이상~4년 미만	5	
		2년 미만	3	
소득요건	20	100% 이하	20	*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(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) 대비 소득 * 소득입증서류 및 심사방법 등 관련 사항은 '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(국토교통부고시)'을 준용함
		100%초과~120% 이하	15	
		120%초과~140% 이하	10	
		140%초과	5	
국적취득 여부	10	국적취득	10	* 국적취득 : 세대주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* 주민등록증
미성년 자녀 수	가점	미성년자녀 (태아 포함)	3명이상 5 2명 3 1명 1	* 세대주 및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의 수 *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. 임신확인증(해당자에 한함)
세대원 중 장애인 여부		중증장애인	2명이상 5 1명 3	* 세대원 중 중증장애인의 수 * 장애인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※ 상기 배점기준을 준용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도 "배점 기준표"('20년 기준 등)를 작성, 사용할 수 있음

※ 동점자 처리기준(월단위로 환산하여 오래된 순으로 함) : 배우자와 혼인기간>무주택기간